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재해 관련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증원하고,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 및 디지털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(4급 또는 5급 1명, 5급 3명)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3. 00. 00. 공포·시행)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의 네트워크안전기획과를 디지털 기반안전과로 과명을 변경하고 하부기구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호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6항 중 “네트워크정책과·네트워크안전기획과·정보보호기획과·정보보호산업과·사이버침해대응과·통신정책기획과·통신경쟁정책과·통신이용제도과·통신자원정책과·방송진흥기획과·뉴미디어정책”을 “네트워크정책과·디지털기반안전과·정보보호기획과·정보보호산업과·사이버침해대응과·통신정책기획과·통신경쟁정책과·통신이용제도과·통신자원정책과·방송진흥기획과·뉴미디어정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제44호를 제4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4.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

제1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”을 “디지털기반안전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네트워크의”를 “네트워크, 집적된 정보통신시설, 부가통신서비스 등 디지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“네트워크 안전”을 각각 “디지털 안전성·신뢰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“통신재난”을 각각 “디지털 장애·재난”

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1호 중 “통신재난 및 안전관련”을 “디지털 장애·재난 및 안전성·신뢰성 관련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2호 중 “통신재난”을 “디지털 장애·재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1항제13호를 삭제한다.

10. 디지털 장애·재난 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고도화

21.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성·신뢰성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

22.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전성·신뢰성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

제33조제1항을 삭제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818”을 “824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809”를 “815”으로 하며,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통계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보건사무관·사서사무관·기상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“67”을 “68”로 하고,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통계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보건사무관·사서사무관·기상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“289”를 “294”로 한다.

별표 4 중 총계 “818”을 “824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809”를 “815”으로 하며,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통계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보건사무관·사서

사무관·기상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“67”을 “68”로 하고,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통계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보건사무관·사서사무관·기상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항공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“308”을 “313”로 한다.

별표 11 4) 조직란 중 “네트워크안전기획과”를 “디지털기반안전과”로 한다.

별표 13 제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네트워크정책실) ① ~ ⑤ (생략)	제10조(네트워크정책실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네트워크정책실에 <u>네트워크정책과·네트워크안전기획과·정보보호기획과·정보보호산업과·사이버침해대응과·통신정책기획과·통신경쟁정책과·통신이용제도과·통신자원정책과·방송진흥기획과·뉴미디어정책과</u> 및 디지털방송정책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	⑥ ----- <u>네트워크정책과·디지털기반안전과·정보보호기획과·정보보호산업과·사이버침해대응과·통신정책기획과·통신경쟁정책과·통신이용제도과·통신자원정책과·방송진흥기획과·뉴미디어정책</u> -----
⑦ 네트워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⑦ -----.
1. ~ 43. (생략)	1. ~ 43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44.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
44. (생략)	45. (현행 제44호와 같음)
⑧ <u>네트워크안전기획과</u>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⑧ <u>디지털기반안전과장</u> -----.
1. 유·무선 <u>네트워크의</u> 안전성·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·종합 및 조정	1. ----- <u>네트워크, 집적된 정보통신시설, 부가통신서비스</u> 등 디지털 -----

2. <u>네트워크 안전</u> 관련 법령의 제·개정	2. <u>디지털 안전성·신뢰성</u> -----
3. <u>네트워크 안전</u> 관련 국제 정책 및 기술동향 조사·분석	3. <u>디지털 안전성·신뢰성</u> -----
4. ~ 7. (생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8. <u>통신재난</u>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	8. <u>디지털 장애·재난</u> -----
9. <u>통신재난</u> 대비 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	9. <u>디지털 장애·재난</u> -----
10. <u>통신재난관리시스템의</u> 구축·운영	10. <u>디지털 장애·재난 관리시스템의</u> 구축·운영 및 고도화
11. <u>통신재난 및 안전관련</u> 통계자료 조사·관리	11. <u>디지털 장애·재난 및 안전성·신뢰성 관련</u> -----
12.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 등 <u>통신재난</u> 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·운영	12. ----- <u>디지털 장애·재난</u> -----
13. ~ 19. (생략)	13. ~ 19. (현행과 같음)
20.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	<삭제>
<신설>	21.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성·신뢰성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
<신설>	22.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전성·신뢰성 관리 및 점검에 관한

⑨・⑩ (생략) ⑪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2. (생략) 13. <u>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운영・관리에 관한 사항</u> 14. ~ 28. (생략) ⑫ ~ ⑮ (생략) 제33조(한시정원) ① <u>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방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며, 별표 13의 정원 1명(행정사무관・공업사무관・통계사무관・환경사무관・시설사무관・전산사무관・방송통신사무관・보건사무관・사서사무관・기상사무관・농업사무관・임업사무관・수의사무관・의료기술사무관・식품위생사무관・항공사무관 또는 연구관 1명)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</u>	<u>사항</u> ⑨・⑩ (현행과 같음) ⑪ ----- -----. 1. ~ 12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14. ~ 28. (현행과 같음) ⑫ ~ ⑮ (현행과 같음) 제33조(한시정원) <u><삭 제></u>
--	--

<u>원해야 한다.</u> ②・③ 삭제 ④ ~ ⑧ (생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
---	-----------------------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3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(제27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계	.		.		.		
			818		824		+6
	.		.		.		
	.		.		.		
일반직 계			809		815		+6
	.		.		.		
	.		.		.		
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통계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보건사무관·사서사무관·기상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			67		68		+1
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통계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보건사무관·사서사무관·기상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항공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	289	294	+5
.	.	.	
.	.	.	

[별표 4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(제27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818	824	+6
·	·	·	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809	815	+6
·	·	·	
·	·	·	
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	67	68	+1
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	308	313	+5
·	·	·	
·	·	·	